

2025 총회 보고서

제14차 (사)월드디아코니아

* 일시 : 2025. 3. 12(수) 11:00

* 장소 : 새은혜교회 N 그레이스 아트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 목차

0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4
02. 회의록	
가. 총 회	5
나. 이사회	6
03. 2024년 사업보고	7
04. 2024년 감사보고	10
05. 2024년 결산보고	12
06. 2025년 사업계획	13
07. 2025년 예산(안)	16
08. 정관변경 대조표	17
09. 법인 정관	18

■ 정기총회

○ 의장 : 오정현 목사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1. 개회기도 김순미 장로(공동단장)
2. 회원점명
3. 개회선언
4. 회순채택 다 같 이
5.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사무총장
6. 2024년 감사보고 감 사
7.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사무총장
8. 2025년 조직(안) 인준
9. 정관변경
10. 기타안건
11. 광 고
12. 폐회기도 권태진 목사(공동단장)

1. 조직

가. 법인이사 명부

연번	직위	성명	소속	임기
1	이사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2022.03.23 ~ 2025.03.22
2	이 사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2.03.23 ~ 2025.03.22
3	이 사	김태영	한국교회봉사단	2022.03.23 ~ 2025.03.22
4	이 사	노영상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22.03.23 ~ 2025.03.22
5	이 사	신관우	부산CBMC	2022.03.23 ~ 2025.03.22
6	이 사	이형규	쿠팡출판사	2022.03.23 ~ 2025.03.22
7	이 사	전광식	고신대학교	2022.03.23 ~ 2025.03.22
8	이 사	전태식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2022.03.23 ~ 2025.03.22
9	이 사	천 환	예일교회	2022.03.23 ~ 2025.03.22
10	이 사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2022.03.23 ~ 2025.03.22
11	감 사	김대권	염천교회	2022.03.23 ~ 2025.03.22

※ 정관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제13차 월드디아코니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1:30 - 12:10 / 장소 : 사랑의교회 웨스트채플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108명중 48명 참석, 26명 위임으로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보고사항

가.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 및 결산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나. 2023년 감사보고

2023년 감사 결과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5. 결의사항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후 12:10이었다.

2024년 2월 21일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월드디아코니아 2024년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1:00 - 11:30 / 장소 : 사랑의교회 웨스트채플

■ 회의

오정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개회기도

김진범 목사(백석 총회장)가 개회기도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

사무총장이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7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오정현 김성이 김태영 이형규 전태식 천환 한기채

○ 불참 : 노영상 신관우 전광식 김대권(감사)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2024년 총회 보고사항

가. 2023년 사업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23년 감사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23년 결산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며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한기채 이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전 11:30이었다.

2024년 2월 21일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3. 2024년 사업보고

1.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가. 양해각서 체결 : 필리핀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2024~2029)와 MOU 체결

나. 선교센터 분리개척

- 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동남아시아 지역(필리핀)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재난 재해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책본부로 필리핀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월드디아코니아의 재난 지원 사역 진행
- 2) 디아코니아선교센터 분립지원 및 선교센터가 설립된 지역의 주민들 중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영어 공부 및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필리핀 몬탈반 소재 아태장신대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다. 사랑의 쌀 지원 :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Barangay Paltok center, Eastbelbew center, Mpbmc Main center, San Rafael center, Southville center와 따알락 화산 난민촌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사랑의 쌀을 매회 2Kg 500~1,000포 나눔

라. 태풍 개미로 인한 선교센터 유지 및 보수

- 1) 2024년 7월 24일(수), 새벽에 발생한 태풍 개미로 인하여 필리핀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선교센터 건물이 유실되어 아래 센터들을 수리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원 중
 - 가) Barangay Paltok center
 - 나) Eastbelbew center
 - 다) Mpbmc Main center
 - 라) San Rafael center
 - 마) Southville center

마. 지원내용

- 1) 1차 : 2024년 8월 3일(토) | 침수건물 오물 철거비용 및 세척비용 200만원 지원
- 2) 2차 : 2024년 8월 13일(화) ~ 15일(목) | Southville center 현장 방문 및 사랑의 쌀 1,000포 지원
- 3) 3차 : 2024년 9월 9일(월) | 따알락 화산촌 온열질환 난민 의료비 250만원 지원
사랑의 쌀 840만원 지원
- 4) 4차 : 2024년 11월 8일(목) ~ 11일(월) | 사랑의 쌀 1,000만원 지원
- 5) 5차 : 2024년 11월 28일(목) | Barangay Paltok center 건물 수리 및 유지비용 850만원 지원
- 6) 6차 : 2024년 12월 20일(금) | Eastbelbew center 건물 수리 및 유지비용 1천만원 지원

2. 캄보디아 지부 사업보고

가. 캄보디아 내 베트남 난민 돕기 프로젝트

1) 사업명 : 캄뵁츠낭 베트남 사랑학교 및 믿음교회 건축 지원 사업

2) 주관 : World Diakonia Cambodia

3) 후원 : 수원 한사랑교회(노승찬 목사)

4) 캄뵁츠낭 :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캄뵁츠낭 주는 메콩강과 이어진 톤레삽 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캄보디아 전체 25개 행정지역 중 하나임. 2024년 현재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1,500세대 약 6,000여명의 베트남 난민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수상촌을 도심지 근처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도록 강제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생활터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머물 수 밖에 없음. 이후 캄뵁츠낭 주 정부는 외곽 지역에 땅을 마련하여 베트남 난민들 마을을 조성하였고 배 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땅 위에서의 삶을 시작.

5) 교육현황 : 캄보디아 내 베트남 난민, 특히 캄뵁츠낭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은 캄보디아 공립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혹 등록이 되어 학교에 간다고 해도, 학교 내 차별이 존재해 베트남 아이들은 정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속람 목사는 지난 1995년 수상 마을에 있을 때부터 교회와 학교를 운영해 왔음. 학교는 현재 캄뵁츠낭 강변 마을로 옮겨왔고, 학교 이름은 캄뵁츠낭 사랑학교이며, 오전에는 베트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캄보디아 수업이 진행됨.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과정이 있으며, 현재는 100-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 사랑학교는 아직 비정규 학교로 캄보디아 정부의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건기에는 학생 수가 150여 명이고, 우기에는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른을 따라다니느라 100여 명이 학교에 나오고 있음.

6) 믿음교회, 사랑학교 : 캄뵁츠낭 강변 마을에 위치해 있고, 목조 건물로 구성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건축이 시급한 상황. 건축 후 건물은 주중에는 학교로,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활용될 예정. 건축은 우기 상황을 고려하여 2층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축을 진행해야 하며, 교인들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건축을 진행할 예정.

7) 기공식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캄뵁츠낭 주 베트남 마을 사랑학교

참석 : 수원 한사랑교회 노승찬 목사 등 9명

나. 양해각서(MOU) : 캄보디아 교육부(2025~2027년), 외교부(2023~2025년)와 각각 MOU를 체결했음. 교육부와 외교부 MOU로 우리 사역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사역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예를 들어 의료선교팀, 젊은이 사역부 현장 사역은 공식적으로는 지역 관청과 함께하는 사역이 됨) 외교부와 관계는 선교사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발급을 하는데 도움이 됨.

다. 꿈꾸는 도서관 프로젝트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정부 교육부 장관과 캄보디아 현지 디렉터(최수철 선교사) 간 MOU가 체결되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우선의 프로젝트를 캄뵁츠낭 주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음. 꿈도서관 프로젝트는 캄뵁츠낭 관내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고, 도서관 담당선생님 모임과 교육을 진행하며 향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캄뵁츠낭 주 초등학생의 독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임. 캄뵁츠낭 주 교육부와도 공식적인 MOU를 맺었고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돕고 있음. 학교마다 도서관 공간은 있으나 책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어린

이 동화책을 공급하고 이를 잘 읽도록 지도하는 일이 어린이 교육에 필수적인 일이 됨. 따라서 초등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독서지도교사를 통한 독서모임을 개최하는 프로젝트는 향후 어린이의 독서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라. 학사관 사업 : 프놈펜 내 7,8명 규모의 학생이 체류할 수 있는 학사관 공간을 두어 학사관 사역을 시작하는 중. 캄퐁하이시온교회, 떡포교회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으로 현재 9명이 프놈펜 학사관 입주 생활 중.

마. 장학사업

현재 프놈펜 학사관에는 8명의 학생이 있고, 후배 선교사의 학사관에 2명이 생활하고 있음. 전원 대학생이고 장학금 지급 중. 10명의 학생 중 6명에게는 1년 500달러의 장학금을, 4명에게는 1,000달러를 지급, 캄뵙츠낭 대학생 4명에게도 500달러씩 2,000달러를 지급하여 총 7,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됨. 아울러 매달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월 6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

1) 대학생 장학금 지급 : 10명 / 7,000달러

2)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 30명 / 5,400달러(2024년 9월 현재) 합계 12,400달러

3. 연대사업

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원단체

4. 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홈페이지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홈페이지 <http://en.koreandiakonia.org>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다. 언론광고

감 사 보 고 서

(사)월드디아코니아 귀하

본 감사는 2025년 1월 24일 13시부터 귀 기관의 2024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5. 1. 24.

감사 김 대 권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건 서

1. (사)월드디아코니아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22년도 이 월 금 : 51,093,341원

2023년도 총 수입금액 : 153,928,492원

2023년도 총 지출금액 : 151,868,576원

잔 액 : 53,153,257원입니다.

(잔액 : 통장잔고 53,080,055원 /보유현금 73,202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
행장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5. 2024년 결산보고서

2024년 WD월드디아코니아 결산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23년 이월금	산 출 근 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51,093,341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비고)
후원금	후원금	경상비후원금	39,000,000	경상비후원(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캄보디아 지정후원금	15,000,000	캄보디아지정후원(한사랑교회)
		일반후원금	58,800,000	일반후원(필리핀문탈반후원및일반후원)
		물품후원금	37,425,000	물품후원(명천자수-셔츠2,495벌)
	소 계		150,225,000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64,112	정기예금(보통예금)이자수입
		잡이익	8,400	자동차이체, 원단위 할인 등
	소 계		72,512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세금	9,810	선납법인세(공제초과분)환급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3,621,170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분
합 계			153,928,492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지급수수료	557,400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세금과공과금	2,022,800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소 계	2,580,200	
	인건비	급여	29,768,712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1,341,560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소 계	31,110,272	
합 계		33,690,472		
사업비	기타사업	캄보디아	14,999,993	캄보디아(희망도서관)사업지원
		필리핀재해구호	54,740,601	필리핀문탈반디아코니아선교센터지원
		사업운영관리비	7,380,000	사업운영관리
		소계	77,120,594	
	합 계		77,120,594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선납세금	7,810	이자수입에 대한 선납법인세
		소계	7,810	
	합 계		7,810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3,088,350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공제분
물품후원	물품후원	물품후원	37,425,000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와이셔츠/반소매티셔츠)지원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536,350	연말정산(소득/지방소득세)환급액
합 계			41,049,700	
총 계			151,868,576	

2024년 결 산	이 월 금	51,093,341
	총 수 입	153,928,492
	총 지 출	151,868,576
	잔 액	53,153,257
지정기금	기본자산	50,000,000
	차기이월 사업준비금	3,153,257
총 잔 액		-

6. 2025년 사업계획

1. 조직사업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다. 사업내용

- 정기 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라. 사업예산

- 5,000,000원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가. 사업목표

- 지진, 태풍 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나. 사업기간

- 2025년 해외 재해발생시

다. 사업내용

-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20,000,000원

3.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가. 사업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 재해민 구호 후속 사업으로 재해민 자립지원 방안 마련
-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건물 유지 보수

나. 사업기간

- 2025년 자연재해 재난 발생 요청 건 진행
- 2025~2029 재해 발생시

다. 사업내용

-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재해 후 자립지원을 위한 후속사업 개발
- 어린이 장학사업

라. 사업주관

- 월드디아코니아 재난지원본부

마. 사업예산

- 100,000,000원

4. 캄보디아 사업

가. 사업목표

- 캄보디아 내 베트남 이주민 아동 교육(베트남 한사랑학교)환경 지원 등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다. 사업내용

- 캄보디아 이주 베트남 어린이 교육센터 지원 사업
- 캄보디아 내 이주민 및 현지인 지원 후원
- 꿈꾸는 도서관 프로젝트
- 학사관 운영 및 장학사업

라. 사업주관 : 월드디아코니아 해외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30,000,000원(한사랑학교 후원)

5. 홍보사업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 국외 재난 지역 교육사업 및 직업(기술)학교 후원 캠페인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및 현장 동행취재 지원
 - 해외재난지역 모금 캠페인 전개(신문 및 방송 광고 진행 등)
- 홍보 대사 선정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 2024년 연차보고서 제작 및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및 도서발행(도서출판 KD)

라. 사업예산

- 10,000,000원

6. 연대사업

가. 사업목표

- 재난지역 한인선교사회와 재난 현장지원 네트워크 협력

○ 국내·외 재난 지원 유관 교단 및 선교 단체들과 협력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다. 사업내용

- 1) 유엔세계식량계획(WFP)
- 2)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3) 한국교회총연합(UCKK)
- 4) 한국군선교연합회(MEAK)
- 5) 한아봉사회(KSSA)
- 6) 기독교환경운동연대(GREENCHURCH)
- 7) 각 교단 재난 재해 담당부서(사회봉사부, 구제부, 국내전도부 등)
- 8) 글로벌호프
- 9) 글로벌위기대응네트워크(NGCRN)
- 10) 소울러브피플(SLP1004)
- 11) 사)프로보노국제협력단(ICP)
- 12) 교계연합단체

라. 사업예산

○ 8,000,000원

7. 2025년 예산(안)

월드디아코니아 2025년 예산(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5년 예산금액
이월금	전년이월금(기본자산 제외)	3,153,257
후원금	일반후원금	36,000,000
	사업후원금	170,000,000
기타수입	잡이익,기타수입	3,800,000
총 계		212,953,257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5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4,000,000
	업무비	2,473,257
	인건비	33,480,000
	소 계	39,953,257
사업비	1. 조직사업	5,000,000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20,000,000
	3.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100,000,000
	4. 캄보디아사업	30,000,000
	5. 홍보사업	10,000,000
	6. 연대사업	8,000,000
	소 계	173,000,000
총 계		212,953,257

(예금)기본자산 50,000,000원

8. 정관변경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6조(회원의 권리) ① <u>회원은</u>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u>회원은</u>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u>회원은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 <신설></u> ① -> ② <u>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u>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구 수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u>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u>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u>회원에서 파송된 자로 한다. <자구 수정></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회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u>총회구성원</u>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구 수정>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해야 한다.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4월에 공개해야 한다. <자구 수정>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2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구 수정>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u>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u>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자구 수정>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재적회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총회구성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구 수정>																				
별지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	별지 <계좌번호 변경>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																				
<table><tr><td></td><td>분류</td><td>금액(평가액)</td><td>내용</td><td>비고</td></tr><tr><td>1</td><td>현금</td><td>50,000,000원</td><td>신한은행 100-026-786840</td><td></td></tr></table>		분류	금액(평가액)	내용	비고	1	현금	50,000,000원	신한은행 100-026-786840		<table><tr><td></td><td>분류</td><td>금액(평가액)</td><td>내용</td><td>비고</td></tr><tr><td>1</td><td>현금</td><td>50,000,000원</td><td>기업은행 022-088591-01-018 사)월드디아코니아</td><td></td></tr></table>		분류	금액(평가액)	내용	비고	1	현금	50,000,000원	기업은행 022-088591-01-018 사)월드디아코니아	
	분류	금액(평가액)	내용	비고																	
1	현금	50,000,000원	신한은행 100-026-786840																		
	분류	금액(평가액)	내용	비고																	
1	현금	50,000,000원	기업은행 022-088591-01-018 사)월드디아코니아																		

9. 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World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시 해외 각 도시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해외 자원봉사운동의 전개 및 교육
3. 해외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4. 국내외 기부문화 확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경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의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의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의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자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해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둘 수 있다.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2년 2월 6일 제정

2018년 5월 21일 개정

〈별지〉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

	분류	금액(평가액)	내용	비고
1	현금	50,000,000원	신한은행 100-026-786840	